

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82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- 현행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하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이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,
-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해외교포, 타시·군 인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 시와의 우호증진과 시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확대(안 제1조)

- 현행 : 외국인
- 확대 : 외국인, 해외교포, 타시·군 인사

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외국인에 수여하는”을 “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타시·군 인사에게 수여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수여하는 부천시명증서(이하 “명예시민증서”라 한다)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타시·군 인사에게 수여하는</u>